

의안번호	제 40 호
의결연월일	2004. 10.

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2004. 10. 4

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

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40 호
----------	--------

제 출 일 자	2004. 10. 4
제 출 자	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중복 조항 정비

- 위원의 임기 : 제5조제4항 ↔ 제7조

나. 용어의 정비

- 결의 ⇒ 의결
- 문화관광과장 ⇒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
- 문화예술담당주사 ⇒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 타

- 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- 2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8조제2항중 “결의” 를 “의결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문화관광과장” 을 “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같은항중 “문화예술담당주사” 를 “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①~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<u>2년으로 하되</u> <u>위원의 결원시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8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<u>결의한다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<u>문화관광과장</u>이 되고, 서기는 <u>문화예술담당주사</u>가 된다.</p>	<p>제5조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<u>한다</u></p> <p>제8조(-----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<u>의결</u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-----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</u>-----<u>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</u>-----</p>

관계법령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

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1995.12.29, 1999.2.8>

~ 중 략 ~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~ 중 략 ~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제3장 조례와 규칙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6조 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제17조 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9조 (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)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<개정 1994·3·16>